

#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88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2. 1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2. 18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실업대책 및 정보화사업추진 정원과 기능전환관련 현장민원해결과 한시기구와 정원이 연장.

### 3. 주요골자

- 현장민원해결과 및 정원 : 2002.12.31에서 2004.6.30일로 연장  
- 5급 1명
- 실업대책 정원 : 2002.12.31에서 2003.12.31일로 연장  
- 6급 1명
- 시군정보화사업추진 정원 : 2002.12.31에서 2004.6.30일로 연장  
- 6급 1명, 9급 1명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 기능전환 관련한 한시기구연장, 실업대책 조직의 시한연장, 시군정보화 사업추진 한시 정원의 기한연장 등 주요시책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

기구와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지침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**5. 질의 및 답변 : 없음**

**6. 토 론 : 없음**

**7. 심사결과**

○ 2002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